직렬(류) 직무기술서

선발단위	임용예정기관	직무분야	임용예정직급(직류)	선발예정인원
733	해양수산부 (☎ 051-773-5073)	선박안전	해양수산주사보 (일반선박)	2명

담당예정업무	○ 선박 및 해상교통안전 관리 업무 *** 지방해양수산청 배치** - 선박톤수 측정, 항만국통제(PSC) 점검, 선박안전관리체제(ISM) 심사 등 - 해상교통안전대책 수립·시행,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등
필요 지식(역량)	○ 공직윤리(공정성, 청렴성), 공직의식(책임감, 사명감), 고객지향마인드 ○ 「해사안전기본법」, 「해상교통안전법」, 「선박안전법」 등 선박안전 관계 법령에 대한 지식 ○ 선박 건조 및 선박 설계에 관한 지식

응시요건	**자격증** *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별표8에 따른 자격증 및 「선박안전법 시행규칙」제97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의 자격요건 선정	※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**관련 분야: 선박승선 등 해기사 면허소지자 관련 업무** ○ 대학에서 항해(또는 기관) 관련 학과 졸업 또는 법령에 따른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과 3급 해기사(항해사<상선> 또는 기관사)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3급 해기사의 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(승선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급휴가기간을 포함)이 있는 자 (관련분야: 선박승선 등 해기사 면허소지자 관련 업무) ○ 대학이나 해양·수산계 전문대학 졸업 또는 법령에 따른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과 2급 해기사(항해사<상선> 또는 기관사)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자 ○ 전문대학 졸업 또는 법령에 따른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과 2급 해기사(항해사 <상선> 또는 기관사)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2급 이상 해기사 면허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(승선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급휴가기간을 포함)이 있는 자 (관련분야: 선박승선 등 해기사 면허소지자 관련 업무) **관련분야: 선박건조 및 선박설계 관련 업무** ○ 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 또는 법령에 따른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 - 기계기술사, 산업기계설비기술사 또는 조선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- 조선기사 또는 일반기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(관련분야: 선박건조 및 선박설계 관련) - 조선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(관련분야: 선박건조 및 선박설계 관련업무)
우대요건		○ 영어능력검정시험성적이 아래 기준점수 이상인 자

구분	토플(TOEFL)		토익 (TOEIC)	텝스(TEPS)	지텔프 (G-TELP)	플렉스 (FLEX)
	PBT	IBT				
일반	567	86	790	385	77(level2)	700
청각장애*	376	-	395	231	-	420

* 청각장애의 정도가 '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(기존 청각장애 2·3급)'이거나, '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% 이하'인 응시자의 경우, 해당 영어능력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 이상인 자